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2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이헌승·박수민·곽규택

김선교 • 고동진 • 박덕흠

박준태 • 백종헌 • 주호영

김승수 · 최형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 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음.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 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4(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 착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지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페달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79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4의3. 제2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페달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29조의4(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자동차제작·판매 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
	1항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 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페달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페 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 착사실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4</u> 의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
	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u><신 설></u>	4의3. 제29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페달영상기록장치가 장착
	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
	<u>지 아니한 자</u>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